

#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9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의의원 : 이상기, 박경원, 김영실,  
김동훈, 전해연, 이진환,  
이수련, 김상수, 김지훈(국),  
원주영, 김지훈(민)

## 1. 제안 이유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병해충의 유입·확산·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 다.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 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 법령 : 덧붙임

##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 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현장대응반장은 업무 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축산지원과장은 행정지원반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후방제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담당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나. 현장대응반 :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의심신고 농가 현장점검 및 임시조치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라. 사후방제반 : 병해충 예찰·방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시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①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예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은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하는 사항으로, 식물방역법 제31조4항(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및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사업지침에 따른 예찰·방제단은 기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편성된 예산이 있음.
  -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 ※ 3개년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명: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연도	예산액(단위: 천원) (국50 도15 시35)	비 고
2022	188,000	-
2023	188,000	-
2024	94,000	-

###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이 장 범

## ○ 「식물방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

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